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 - 39

발의연월일: 2019. 6. .

발 의 자: 황영호, 김용원, 정정희, 윤유선, 김성한, 박주선, 송순효, 최동철, 송영섭, 김현희, 신낙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 대상을 세분하여 명시(안 제5조)

나.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

다. 환수조치의 정비(안 제9조)

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생활보장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6. 5. ~ 6. 10.): 의견 없음

2) 전문 및 관계법령: 붙　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2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9. 일반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성별 운영비

제9조 제목 “사업비 등의 환수”를 “환수조치”로 하고,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사업비 등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5. 아동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제2항 중 “11명”을 “5~15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센터 종사자의 대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2조제1항 제8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이용의 대상) (생 략)	제5조(이용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그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신 설>	5. 조손가족의 아동
<신 설>	6. 한부모가족의 아동
<신 설>	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신 설>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신 설>	9. 일반아동
<신 설>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사업비의 지원) (생 략) <신 설>	제7조(사업비의 지원)(현행과 같음) 5. 특성별 운영비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신 설> <신 설>	제9조(환수조치)(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4. 사업비 등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5. 아동복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6. <신 설> 6.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등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5 ~ 15명----------. ③ (현행과 같음) 6. 센터 종사자의 대표 7. ---------- 8. ----------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및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